

【점수제 구직비자(D-10-1) 배점표】

□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

| 배점항목 | | 배점기준 | | 배점 | 비고 |
|----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1. 기본 | ① 연령 | 20~ 24세 | | 10 | 50점 |
| | | 25~ 29세 | | 15 | |
| | | 30~ 34세 | | 20 | |
| | | 35~ 39세 | | 15 | |
| | | 40세~49세 | | 5 | |
| | ② 최종학력 | 국내 | 전문학사 | 15 | |
| | | | 학사 | 15 | |
| | | 국내/국외 | 석사 | 20 | |
| | | | 박사 | 30 | |
| | | 국내 | 국외 | | |
| 2. 선택 | ① 취업경력 | 1년~2년 | 3년~4년 | 5 | 70점 |
| | | 3년~4년 | 5년~6년 | 10 | |
| | | 5년이상 | 7년이상 | 15 | |
| | | 전문학사 (졸업후 3년이내) | | 5 (30) | |
| | ② 국내유학 | 학 사 (졸업후 3년이내) | | 10 (30) | |
| | | 석 사 (졸업후 3년이내) | | 15 (30) | |
| | | 박 사 (졸업후 3년이내) | | 20 (30) | |
| | | 대학 연구생(D-2-5), 교환학생 (D-2-6), 국공립기관 연수(D-4-2), 시설 기관 연수 (D-4-6) | 12개월~18개월 | 3 | |
| | ③ 국내연수 | | 19개월이상 | 5 | |
| | | 어학연수 (D-4-1) | 12개월~ | 3 | |
| 3. 가점 | ④ 한국어 능력 |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/ 사회통합 프로그램(KIIP) | 5급/5단계 상당 | 20 | 70점 |
| | | | 4급/4단계 상당 | 15 | |
| | | | 3급/3단계 상당 | 10 | |
| | | | 2급/2단계 상당 | 5 | |
| | ① | 관계 중앙행정기관장, 재외공관장 구직비자 발급 추천 | | 20 | |
| | ② | -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(THE 200대, QS 500대) | | 20 | |
| | ③ | - 아시아권 QS 1,000위 이내 현지 대학 이공계 졸업생 (베트남, 중국, 태국, 일본, 인도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필리핀) | | | |
| | ④ | 글로벌기업근무 경력자(포천지 500대) | | 20 | |
| | ⑤ | 이공계 학사(국내 전문학사 포함) 학위 소지자 | | 5 | |
| | ⑥ | 고소득(5만달러) 전문직 종사 경력자 | | 5 | |
| 4. 감점 | ① 출입국관리법 위반(단위: 만 원) | | | ② 형사처벌 전력(단위: 만 원) | |
| | 범칙금 300 이상 | 범칙금 100이상~300미만 | 범칙금 50이상~100미만 | 벌금형 300 이상 | 벌금형 200이상~300미만 |
| | -30 | -10 | -5 | -30 | -10 |
| | -5 | | | | |
| | -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처분금액의 합산액 기준(과태료 미포함), ①와 ②항목 간 합산 점수 적용(중복 산정) | | | | |
| | - 【주의】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범칙금을 받아 「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」에 따라 체류허가 제한도거나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자격 제한 대상임 | | | | |

【점수제 구직비자(D-10-1) 세부평가 및 배점표】

□ (점수요건)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득점이 60점 이상

가. 기본항목 : 최대 50점 중 20점 이상인 자

1) 연령 : 최대 20점

| 구 분 | 20 ~ 24세 | 25~ 29세 | 30~ 34세 | 35~ 39세 | 40세~49세 |
|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배 점 | 10 | 15 | 20 | 15 | 5 |

<범례> 연령은 만 나이로 계산, 예시 - 49세12월30일까지는 점수 5점을 부여함

2) 최종학력 : 최대 30점

| 구 분 | 국내 | | 국내 · 국외 | | |
|-----|------|----|---------|----|--|
| | 전문학사 | 학사 | 석사 | 박사 | |
| 배 점 | 15 | | 20 | 30 | |

<범례> : ①학위증만 인정(졸업증, 수료증, 자격증 등 불인정)

②국외 전문학사의 경우 국가마다 상이한 학제를 운영하고 있으며, 학위 취득 여부 확인이 불명확하여 해외 전문학사는 대상에서 제외

③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과정 이수자는 석사학위에 준하여 인정

나. 선택항목 : 최대 70점

1) 최근 10년 이내 근무 경력 : 최대 15점

| 구 분 | 국내근무 | | | 국외근무 | | |
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| 1년~2년 | 3년~4년 | 5년 이상 | 3년~4년 | 5년~6년 | 7년 이상 |
| 배 점 | 5 | 10 | 15 | 5 | 10 | 15 |

<범례> : 최근 10년 이내 국내 + 국외 경력 중복 산정 가능하며, 학위취득 후 전공 관련 유사 분야 경력에 한정함

☞ 유사경력 여부는 신청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입증하여야 하며, 인턴 등 구직과정에서의 경력은 제외함

2) 국내 유학(2년 이상)경력 : 최대 30점

| 구 분 | 전문학사 | 학사 | 석사 | 박사 |
|-----|------------|----|----|----|
| 배 점 | 졸업 후 3년 이내 | 30 | 30 | 30 |
| 배 점 | 졸업 후 3년 이후 | 5 | 10 | 15 |

<범례> : 외국대학과 복수학위제 등을 통해 2년 미만의 수업을 받고 국내 학위를 취득한 경우 / 사이버대학 졸업 및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국내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유학 점수 불인정. 단, 기본항목의 학력 점수에서 취득 학위별 점수 인정 가능

※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이수자는 석사학위에 준하여 인정

3) 기타 국내 연수, 교육 경력(1년 이상) : 최대 5점

| 구 분 | | 대학 연구생 (D-2-5) | 교환학 생 (D-2-6) | 국공립 기관 연수(D-4- 2) | 어학연 수 (D-4-1) | 우수사설 기관 연수 (D-4-6)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배점 | 1년~1년6개 월 | 3 | 3 | 3 | 3 | 3 |
| | 1년 7개월 이상 | 5 | 5 | 5 | | 5 |

<범례> : 대학, 기관 등에서 연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한 경력, 이력, 이수증 등으로 요건 입증

※ 최종 학력과 국내 연수, 교육, 학력은 기간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 적용 가능(ex. 학력 + 국내 유학 + 어학연수 + 교환학생)

4) 한국어능력 : 최대 20점

| 한국어능력 기준 | 배점 | 입증 서류 |
|--|----|---|
|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종합평가 합격 /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5급 이상 | 2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(한국이민영주자격과정) -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(한국이민구화자격과정) - 한국이민영주자격시험 합격증(KIPRAT) - 한국이민구화자격시험 합격증(KINAT) -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성적증명서(TOPIK IBT 성적증명서 포함) |
|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또는 중간평가 합격, 사전평가 81점 이상 /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4급 이상 | 15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의 ①에 해당하는 서류 -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(4단계 이상 이수 기재되어야 함) -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 합격증(KLCT)(※ 중간평가 합격증) -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(사전평가 점수 기재되어야 함) |
|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/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3급 이상 | 1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서류 -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(3단계 이상 이수 기재되어야 함) -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(사전평가 점수 기재되어야 함) |
| ④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/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2급 이상 | 5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의 ① 또는 ②, ③에 해당하는 서류 -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(2단계 이상 이수 기재되어야 함) -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(사전평가 점수 기재되어야 함) |

<참고> :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별 이수 및 중간종합평가 합격증은 유효기간 없이 인정되나, 사전평가는 결과발표일로부터 유효기간 2년, TOPIK은 증명서 기재된 유효기간(2년)까지 인정

다. 가점 부여 (중복 산정 가능) : 총 70점

1)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재외공관장의 구직비자 발급 추천 (20점)

- 구직분야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재외공관장이 전문인력임을 확인하여 비자발급 관련 추천을 하는 경우
- 관계부처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와 요건을 준용하며 이 경우 취업예정 기업이 없으므로 기업에 대한 요건 심사를 생략함

※ (추천서 첨부서류) 학력입증서류, 경력증명서, 해당 단체 추천서 또는 관련 입증자료 등(권위 있는 국제 또는 국내대회 입상 및 언론 등에 보도된 경우)

2) 글로벌기업 근무 경력자 : 20점

- 최근 3년 이내 Fortune志 선정 500대 기업에서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

3)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: 20점

- 최근 3년 이내 Time志 선정 200대 국내외 대학의 졸업생
- 최근 3년 이내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국내외 대학의 졸업생

※ THE, QS 200위 이내 해외 대학 졸업자로서 29세 이하 유망인재는 점수제 면제

※ (아시아권 QS 1,000위 이내 현지 대학 이공계 졸업생) ①29세 이하, ②한국어능력시험(TOPIK) 2급이상 소지자로 ③베트남, 중국, 태국, 일본, 인도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필리핀(총 9개국) 국적만 허용(20점) - '27. 10.까지 시범운영

4) 이공계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: 5점

- 국내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중 이공계 분야도 가점 부여
- ※ 이공계 분야 국외 전문학사 등은 학력검증이 불가하므로 대상에서 제외

5) 고소득 전문직 종사 경력자 : 5점

- 직전 근무처의 연봉이 5만 달러 이상인 외국인에 대하여 해당국가 정부발행 소득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이 될 경우 가점 부여

라. 법 위반자에 대한 감점항목 : 최대 60점

| 출입국관리법 위반 (단위: 만 원)① | | | 형사처벌 전력 (단위: 만 원)②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범칙금 300 이상 | 범칙금 100이상~300미만 | 범칙금 50이상~100미만 | 벌금형 300 이상 | 벌금형 200이상~300미만 | 벌금형 200 미만 |
| -30 | -10 | -5 | -30 | -10 | -5 |
| -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처분금액의 합산액 기준(과태료 미포함), ①와 ② 항목 간 합산 점수 적용(중복 산정) - 【주의】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범칙금을 받아 「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」에 따라 체류허가 제한되거나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자격 제한 대상임 | | | | | |